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나.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12조제3호·제7호 개정)

협동조합 또는 보호구역 주민이 참여하여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1. 9.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보호구역의 변경)”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해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를, 보호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각각 첨부하지 않는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해당 수도사업자가 제1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해당 시·도지사가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 또는 제2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구역의 관계 시·도지사(해당 보호구역이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다른 시·도지사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1. 협의의 대상자(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에 시·도지사가 포함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제1호 외의 경우: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결정한 경우 해당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구역의 변경·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의 직권 변경·해제, 보호구역 변경·해제의 공고, 보호구역지정대장의 작성·비

치(보호구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의 제출 서류, 지적고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4항·제5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카목의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제12조제3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설비”라 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4)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제12조제3호타목(종전의 카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태양에너지설비”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호소의 수면,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댐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자 또는 다음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해당 설비의 설치·운영계획 및 설치·운영·폐기 과정에서의 환경관리계획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할 것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역 주민이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참여할 것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수원보호구역지정·변경·해제신청서	
①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②수도사업자의 명칭·주소	
③취수장(구)의 위치	
④수원의 종류	
⑤취수목적 및 공급처	
⑥취수용량	m ³ /일
⑦구역면적(제곱미터)	m ²
⑧관리청	
⑨지정·변경·해제사유	
⑩구역설정판단사유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1부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 1부(다만, 보호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해당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 및 위치도 각 1부 4. 해당 구역의 지목별·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및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각 1부 5. 해당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1부 6. 해당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 1부(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해제 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51318-25611민

210mm×297mm

92.11.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u>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해제) ① <u>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해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를, 보호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각각 첨부하지 않는다.</u>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해당 수도사업자가 제1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해당 시·도지사가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 또는 제2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구역의 관계 시·도지사(해당 보호구역이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다른 시·도지사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신 설>

<신 설>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1. 협의의 대상자(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에 시·도지사가
포함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제1호 외의 경우: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
구역의 변경·해제를 결정한 경
우 해당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
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구역의
변경·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
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의 직
권 변경·해제, 보호구역 변경
·해제의 공고, 보호구역지정대
장의 작성·비치(보호구역 변경
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항제1
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
의 제출 서류, 지적고시에 관하
여는 제6조제2항·제4항·제5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
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단서 신설>

가. ~ 차. (생략)
<신설>

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카목의 경
우에는 보호구역에서 농림업
이나 수산업 외의 업종에 종
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설비”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다른 농업협동조합 및 축
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
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4)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
민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을 하는 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
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
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
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
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타. 그 밖에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 3) (생략)
4.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 가. ~ 다. (생략)
- <신 설>

-----.

- 1) ~ 3)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7. -----
----- 태양에너지설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호소의 수면,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댐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1) 다음의 자 또는 다음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을 목적으로 공동출자
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
인이 해당 설비의 설치·
운영계획 및 설치·운영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관리계획을 해당 지방환
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당 설
비를 직접 설치·운영할
것

가) 「지방자치법」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수자원공사
법」에 따른 한국수자
원공사

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
회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역 주민이 해당 태양
에너지 발전사업에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7조의2에 따라

8. · 9. (생략)	<u>참여할 것</u> 8. · 9. (현행과 같음)
--------------	----------------------------------